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 도 자 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14년 9월 18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구주통상과 이승렬 과장(044-203-5660), 박다정 사무관(044-203-5663)		

제1차 한-유럽연합(EU) 산업정책대화 개최

□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과 다이엘 갈리에야 크레스포(Daniel Calleja Crespo)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기업산업총국장(차관급)은 9. 17.(수)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국-유럽연합(EU) 산업정책 대화」 설립을 위한 행정약정을 체결하고, 이어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양측 간 산업정책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이번 산업정책대화 개최는 '13. 11. 한국-유럽연합(EU) 정상회담 시 산업정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고위급 협의 채널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 제1차 산업정책 대화에서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중소기업 지원, 기술협력, 미래성장동력 등 3개 분야에서 양자 간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 산업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양자 간 중소기업 교류 확대 방안으로

- 유럽연합(EU) 역내에서 개최되는 한국 주최 중소기업 지원 행사에 유럽연합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양측 중소기업 간 교류를 확대했다.

- 유럽연합(EU)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럽연합 사절단(Mission for Growth*)」의 한국 방문을 추진해 유럽연합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 EU 집행위원 또는 총국장을 단장으로 해당 지역 투자에 관심 있는 EU 기업 50-150개사와 함께 방문하는 프로그램

○ 우리 기업이 EU 역내 기업과 핵심기술을 공유하고 공동 개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 세계 최대 기술 이전 네트워크인 글로벌 기술협력 네트워크(EEN)*의 차기 사업('15 ~ 21년)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보장하여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 기업과 지속적인 기술 공유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 글로벌 기술협력 네트워크(EEN: Enterprise Europe Network) -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45개국 71개 컨소시엄이 참여하여 조직한 최대 규모의 세계적인 사업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 유럽연합 역내 공동 기술 개발 교육 워크숍 및 기업 교류 활동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보장하여 우리 기업의 유레카·유로스타 프로그램의 적극적 활동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 우리 기업사절단 EU 방문 : '14. 11. 17. ~ 30. 동안 유레카사무국 주관 유로스타 현지교육 워크숍 및 유레카 의장국인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이노베이션 포럼과 매치메이킹에 참가 예정.

○ 한국과 유럽연합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우리 미래 성장동력 사례로 현대차의 수소 연료전지차 기술 개발을 소개했다.

- 이와 관련, EU와 한국 간 국제표준협력을 위해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자동차 작업반 이행 협의'에서 국제표준을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해 우리 친환경차 표준과 유럽연합 역내 친환경차 표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또한, 최근 주요 산업현장에서 잇달아 일어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하기 위한 산업안전 분야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우리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찾기로 했다.

붙임 1. 제1차 산업정책대화 개요
2. 산업정책대화 설립 행정약정(국문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 박다정 사무관(☎ 044-203-56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제1차 산업정책대화 개요

□ **일 시 :** ‘14.9.17(수) 10:00~12:00(2시간)

□ **장소 :** 벨기에 브뤼셀, EU 기업산업총국 회의실

* 회의 전 한-EU 산업정책대화 설립에 관한 행정약정 서명식 진행

□ **참석자**

【한국측】차관님, 이승렬 구주통상과장, 관련기관(KOTRA, KIAT, 현대차), 실무자 등

【EU측】Daniel Calleja Crespo EU 기업산업총국장, 관련기관, 실무자 등

□ **논의 영역**

○ 4개 분야

- 분야 1 : 양측 산업정책 전반 설명
- 분야 2 : 우리측 의제 제기(중소기업협력, 기술협력, 미래성장동력)
- 분야 3 : EU측 의제 제기(기계・전기전자, 섬유)
- 분야 4 : 기타의제(산업안전, 조선)

참고 2 산업정책대화 설립 행정약정(국문본)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기업·산업총국 간의 산업정책대화 설립 행정약정

FTA 동반자로서 양측은 한-EU FTA 체제를 통해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밀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으며, 그러한 협력이 한-EU 기본협정에 예견되었던 산업정책분야로까지 확대되어야 함을 인정하면서,

2013년 11월 8일 한-EU 정상회담에서 양측 지도자들이 특히, 산업경쟁력, 기업가정신, 혁신 및 중소기업지원을 향상하기위한 산업정책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후,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기업·산업총국은 산업정책 분야에서의 협의와 논의을 위해 산업정책대화를 설립한다.

1. 원 칙

동 대화는 특히, 산업경쟁력, 기업가정신, 혁신 및 중소기업 지원을 향상시키기 위한 산업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동 대화는 상호 유익한 발전과 호혜적인 산업발전을 위해 상호간 이해를 촉진하고, 의견 차이를 좁히며, 의견 일치를 확대하여야한다.

동 대화는 양측에 공동 관심사인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 이것은 특정영역의 사안과 전반적인 영역의 사안을 포함한다.

2. 목 적

동 대화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기업들을 위한 구조 조건들을 개선하는 관점에서, 양측의 산업정책과 관련 정책·수단에 대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보 및 경험의 교환에 초점을 둔 수단이 되는 것

- 산업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기업간 접촉을 촉진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산업 영역의 번영을 증진하는 것

-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통해 그리고 전 영역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증진하는 것

- 양자간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 협력프로그램의 개발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

- 양측에서 산업정책 발전에 대한 상호간 이해를 촉진함으로써 FTA의 완전한 이행과 정신에 기여하는 것

3. 적용 범위

동 산업정책대화는 기업과 연구 기관을 연결하고 공동 연구, 창의성 그리고 비기술적 혁신을 원활히 하는 것을 돕기 위해 특히, 산업경쟁력, 중소기업의 국제화, 표준과 적합성 평가, 혁신, 기술 협력과 같은 주제들을 다룬다. 주제의 범위는 양측이 동의할 경우 확대될 수 있다.

4. 작업반

작업반은 동 대화에서 이미 논의되었으나 더 심도있는 협의가 필요한 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양측의 상호 동의하에 동 산업정책대화 산하에 설치될 수 있다.

5. 접촉선

대한민국의 접촉선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정책과와 구주통상과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접촉선은 기업·산업 총국의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양측의 접촉선은 의제, 날짜와 시간, 참석자와 같은 산업정책대화의 개최와 준비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6. 주최와 참석

양측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서울과 브뤼셀에서 매년 교대로 산업정책대화를 개최한다.

산업정책대화의 수석대표는 대한민국의 차관급 공무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총국장급이 된다. 또한, 관련 정부 부처나 기관의 실무급 공무원은 사안에 따라 참석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양측이 동의할 때, 산업협회의 대표자들도 참석할 수 있다.

각 행정부의 조직 구조와 역량 차이를 고려하면서, 양측은 각 대표단의 지위와 구성이 동등하고, 그 지위·구성이 동 대화가 다루기로 합의된 주제를 반영하는 것을 보장한다.

참석에 따르는 비용은 각각 부담해야하며, 동 산업정책대화를 주최하는 비용은 주최측이 지불해야한다.

산업정책대화의 모든 회의 후에는 양측이 공동 회의록을 작성한다.

7. 개정과 추가

상호 동의에 의해 양측은 동 행정약정을 언제든지 개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8. 법적 지위

동 행정약정은 명시된 만료일 없이 동 대화의 첫 번째 회의에서부터 효력이 있다.

동 행정약정은 유럽연합과 대한민국을 구속하는 국제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의도되지 않으며, 국제법 하의 협정을 구성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유럽연합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산업집행위원회 총국
차관	총국장